

대법원 2019. 3. 14 선고 2018다291699 판결 [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9. 3. 14 선고 2018다291699 판결

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10. 16 선고 2017나28520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강

담당변호사 김종화, 김진동, 권인성

피고, 상고인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선명 법무법인

담당변호사 김선범

판결 선고2019. 3. 14.

원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10. 16. 선고 2017나28520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,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안철상

대법관박상옥

대법관노정희

주심대법관김상환